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55
----------	------

2024년 12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4년 10월 16일
다. 회부일 : 2024년 10월 18일
라. 상정일 :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진만)

가. 제안이유

- 조례 내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이 '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세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을 '27. 12. 31.까지 3년 연장(안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8. 16. ~ 2024. 9. 5) 결과: 의견 없음.
- (2) 비용추계서 : 미첨부(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 태 한)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이 만료(2024.12.31. 자)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11개 조문*)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에 따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지방세 감면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15개 조문 중,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에서 감면 적용기한을 직접 정하고 있거나, 적용기한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조문 또는 자치구 세목에 연동되는 시세 세목(특별시분재산세) 등에 해당하는 4개 조문을 제외한 11개 조문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

** "지방세 특례" : 서울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등(「지특법」 제2조제6호).

※ 연간 지방세(시세) 감면액은 233억 7천 3백만원(2024년 추계액) 규모이며, 본 개정안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 대상 11개 조문의 감면 추계액은 68억 6천 7백만원 규모임.

〈 시세감면조례 조문별 감면 조항 개요 〉

- 총 15개 감면 조문 중 감면기한 연장 대상 11개 조문(음영표시) -

(단위 : 백만원)

연번	감 면 조 항	도입 연도	감면세목(을)	'24년 추계액
	합 계			23,373
1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3)	1997	취득세·자동차세(100)	88
2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4조의2)	2022	취득세·도시지역·지역 자원(100)	-
3	공연장에 대한 감면(§5)	2008	취득세·도시지역·지역 자원(100)	979
4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6)	2004	취득세·도시지역(50)	242
5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감면 (§6조의2)	2023	취득세(50)	2,784
6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7) ※ 조례로 감면율·감면기간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일몰기한 2025.12.31로 규정	1999	취득세(100)	-
7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8)	1998	취득세(50)	32

연번	감면조항	도입연도	감면세목(을)	'24년 추계액
8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9)	1977	도시지역·지역자원(100)	-
9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10)	2004	취득세·도시지역·지역자원(100)	17
10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11)	2013	취득세·법인지방소득세·주민세(50)	506
11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12)	2011	취득세(100)	1,616
12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13) ※ 조례로 추가경감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일몰기한 2025.12.31.로 규정,	2016	취득세(15, 25)	7,239
13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14)	2018	도시지역(100)	603
14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15) ※ 자치구에서 구(區)분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도 동일하게 감면	2008	자치구 재산세 감면을 적용	6,024
15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16) ※ 조례로 감면액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일몰기한 미규정,	2011	800원 또는 1,600원	3,243

※ '24년 감면총량제에 따른 시세 감면 한도액은 4,178억원임(전전년도 시세 징수액 261,638억원 X 1.6%),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6호, 2024. 6. 10.)

○ 한편, 「지특법」은 주민의 복리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금년 말로 3년의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본 조례의 11개 조문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주관부서에서는 감면기한 연장에 동의하고 있음(붙임1 참조).

* 장애인·서민생활·사회적가치 중심의 세제지원, 일자리 창출 효과 확대를 위하여 투자, 창업, 산업지원 감면 지속, 문화예술 사업 지원,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감면 지속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감면기한 연장 등 개요(11개 조문) 〉

연번	감면조항	감면사유	도입 시기	개정사항
1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3)	시각지대에 있는 종전 시각장애인 4급 해당 장애인의 차량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활지원	1990	연장 (3년)
2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4조의2)	감염병 진료를 위해 기설건축물 설치시 세부담 경감으로 신속한 설치 지원을 통해 감염병 대응	2022	연장 (3년)
3	공연장에 대한 감면(§5)	대다수 영세공연사업자 지원으로 공연장 지속 확충 및 시민 문화혜택 확산	2008	연장 및 재설계 (3년)
4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6)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유인 및 비문화업종영업허가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 일부 보전	2004	연장 (3년)
5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시설에 대한 감면(§6조의2)	조례 감면을 통해 성수 IT 진흥지구 내 정보통신 등 권장업종 유치 및 산업 집적화 유인	2023	연장 (3년)
6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8)	준공업지역 내 산업공동화 현상 방지 및 산업기능 활성화와 산업재개발 유인	1998	연장 (3년)
7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9)	철거되는 무허가 건축물 감면으로 철거민 생활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1977	연장 (3년)
8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10)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004	연장 (3년)
9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11)	비영리목적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2013	연장 (3년)
10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12)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원주민의 재정착 지원	2011	연장 (3년)
11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14)	실효위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기능 유지와 기존 지방세 감면과의 조세형평 제고	2018	연장 (3년)

〈 시세감면조례 감면기한 미규정 대상(4개 조문) 〉

연번	감면조항	감면 근거법령	조례 위임사항
1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7)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기간 감 면 율
2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13)	지방세특례제한법	감 면 율
3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16)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제금액
4	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15)	지방세기본법	해당 없음

* 지방세기본법 (§9)에 따른 공동재산세 보완 규정으로 자치구에서 구(區)분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도 동일하게 감면하기 위한 규정임

- 본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 관련 주관부서의 의견 및 조세전문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감면 연장 대상 사업 11조문 모두에 대해 법정 감면기한을 상한 기간에 맞추어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 지방세 정책의 효율적 수행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 특례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본 개정안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나. 예산안과 관련한 안건의 예산회기 제출 지양

- 재무국은 금번 정례회(제327회)에 본 개정안을 안건으로 제출하였는바, 제출 시기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 개정안에 따른 금년 지방세 감면액 규모는 68억 6천 7백만원으로 추계되고(11개 감면 조문),
 - 본 개정안이 금번 회기에 원안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감면 총액 규모만큼 2025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의 증액 편성과, 이에 연동하여 세출예산 또한 조정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바,
 - 지방세 감면의 연장 운영 여부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을 수반하는 본 개정안을 예산 회기에 맞추어 제출한 것은 의회 심의·의결권을 제약 또는 침해하는 행태라고 할 것으로, 본 개정안 제출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다. 조문별 개정 개요

- 「지특법」(제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3항)은 감면 조문별 3년간의 연평균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재무국은 2024.7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본 조례의 시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음.

- 최근 3년 결산기준 본 조례의 감면 규정(15개 조문)에 따른 최근 3년 감면 실적은 평균 199억 8천 3백만원 수준이나,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및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 등은 감면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감면 조문을 폐지하고, 필요 시 다시 도입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등, 감면 규정별로 지방세 감면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21~'23) 조례 조문별 감면규모 〉

(단위 : 천원)

조문	제목	감면 기한	감면세목(율)	2021	2022	2023
합 계				27,012,997	16,078,572	16,557,318
§3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2024.12.31.	취득세·자동차세 (100)	97,017	78,865	86,672
§4의 2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 에 대한 감면	2024.12.31.	취득세·도시지역· 지역자원 (100)	-	11,094	1,169
§5	공연장에 대한 감면	2024.12.31.	취득세·도시지역· 지역자원(100)	342,522	913,159	1,683,028
§6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2024.12.31.	취득세·도시지역 (50)	352,658	371,422	3,167
§6의 2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감면	2024.12.31.	취득세(50)	-	-	2,784,442
§7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100)	-	-	-
	※ 조례로 감면율·감면기간 위임, 지특법에 감면일몰기한을 2025.12.31.로 규정		※사업개시일부 터 10년간 면제, 그다음 5년간 50%	-	-	-
§8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2024.12.31.	취득세(50)	96,484	889	-
§9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2024.12.31.	도시지역·지역자 원(100)	-	-	-
§10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2024.12.31.	취득세·도시지역· 지역자원(100)	19,177	17,799	14,247
§11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2024.12.31.	취득세·법인지방 소득세·주민세 (50)	196,406	657,122	667,045
§12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24.12.31.	취득세(100)	3,706,894	1,142,470	-
§13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신증축15 , 대수선25)	8,312,958	8,362,887	5,041,849
	※ 조례로 추가경감 위임					
§14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2024.12.31.	도시지역(100)	559,906	609,658	663,914

○ **감면실적(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추계)
감면액	97	79	87	88

▶ '24년(추계) 계산 : '21~'23년 3개년 감면 평균액

〈 **시세 감면조례 타당성 평가 요약(한국지방세연구원)** 〉

(단위: 백만원)

구분	감면 규모 (2023)	일몰 연장 여부	검토의견
제3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86.7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증시각장애인의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증 시각 장애인을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모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제3조제1항의 조문은 지나치게 문장이 길고, 여러 내용이 뒤섞여 있으며,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문 정비 등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안 제4조의2)

- 안 제4조의2는 감염병 진료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면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본 감면은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 등의 용도로 설치한 임시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2022.3.10.)된 것으로,
 - 재무국은 현재 감면수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하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지방세 감면 규모는 2022년 1천 1백만원, 2023년 1백만원 감면 이후 감면 실적이 없음.

조항	현행('24)	개정안('25~)
제4조의2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u>2024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u>2027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감면개요

○ 신설경위(목적) : 2022. 3. 10 신설

-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원활한 진료 목적으로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선별진료소로 운영

*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진료소 설치 등(감염병예방법 제37조 및 제38조)

[서울시 선별진료소 현황('21.10월말)]

(단위 : 건)

합계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비고
	의료기관 (이동식, 기존 건물 제외)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지자체)	국립·시립 병원	
238	133	25	56	24	

-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 되어 존치기간이 1년 초과 시 의료기관의 세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시설에 대하여 감면이 필요하여 조례 감면 시행

감면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추계)
감면액	-	11	1	-

▶ '24년(추계) : 코로나 19 종식으로 인한 가설건축물 철거로 감면대상 없음

- 다만, 시세 감면조례 타당성 평가에서는 현 상황에서 직면한 감염병이 없고, 새로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으므로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신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감면 규정 유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세 감면조례 타당성 평가 요약(한국지방세연구원) 〉

(단위: 백만원)

구분	감면 규모 (2023)	일몰 연장 여부	검토의견
제4조의2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실적	1.2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지원 필요성, 제도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제도임 - 현 상황에서 직면한 감염병이 없고, 이 제도가 필요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 신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공연장에 대한 감면 3년 연장 및 조문 재설계(안 제5조)

- 안 제5조는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감면(면제)을 3년 연장하고,
 - 취득세 감면 요건 중 현행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로 개정하여 재산세 감면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며,
 - 현행 조례는 국가 소속의 공공기관도 본 조례를 통해 감면을 받게 되는 등, 지방세가 중앙정부로 이전되는 효과의 발생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으로 통해 「지특법」(2023.12.29. 개정)에서 배제하고 있는 공공기관(국가공사, 국가공단 등)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려는 것임.
- 2023년 감면 규모는 16억 8천 3백만원 수준으로, 재무국은 「지특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되, 감면 대상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조 항	현 행('24)	개 정 안('25~)
제5조 (공연장에 대한 감면)	<p>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② < 생 략 ></p>	<p>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p> <p>② < 현행과 같음 ></p>

감면개요

- 감면대상(물건) :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물건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감면율) : 취득세(면제), 재산세 도시지역분(면제), 지역자원시설세(면제)
- 감면시행 : '08. 7. 30.
- 최근 5년간 등록 공연장 현황 ('19년~'23년까지) (단위 : 개소)

연도	2023		2022		2021		2020		2019	
구분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개소	326	107	330	101	329	98	322	97	318	95
합계	433		431		427		419		413	

○ 감면실적(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추계)
감면액	342	913	1,683	979

▶ '24년(추계) 계산 : '21~'23년 3개년 감면 평균액

- 다만,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조세의 감면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획일적인 지방세 지출 방식보다는, 열악한 공연예술계를 선별하여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3년 연장(안 제6조)

- 안 제6조는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권장시설*로 사용(임대 포함)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50%)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3년간 50%) 감면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7. "권장업종"이란 입지상 비교우위에 있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 중 해당 진흥지구 내에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흥계획 수립 시 고시한 업종을 말한다.

- 최근 3년 평균 감면 규모는 연 2억 4천 2백만원 수준으로, 재무국은 인사동 및 대학로의 권장업종 존립 여부가 위태로운 상황이며, 기존 권장시설의 존속과 신규 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써 감면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 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조 항	현 행('24)	개 정 안('25~)
제6조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4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7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p>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③ < 생 략 ></p>	<p>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③ < 현행과 같음 ></p>
--	---

감면개요

▶ **인사동 권장시설** : 표구점, 골동품점, 필방/지업사, 공예품점, 화랑/갤러리

구분	권장업종					
	계	골동품	화랑	필방 지업사	표구사	공예품
개소수	356	44	165	32	23	92

▶ **대학로 권장시설** : 공연장, 박물관, 갤러리, 미관건축물, 학교시설, 영화관

구분	권장업종						
	계	등록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미관 건축물	학교 시설	영화관
개소수	191	162	4	8	3	13	1

※ 타시도 문화지구(3) : 파주 헤이리('09년), 인천 개항장('10년), 제주 예술인('10년)

○ 감면세목(감면율) : 취득세(50%), 재산세도시지역분(3년간 50%)

※ 구세인 재산세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50% 감면

○ 사후관리 : 추정사유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추정

□ 감면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추계)
감면액	352	371	3	242

▶ '24년(추계) 계산 : '21~'23년 3개년 감면 평균액

- 다만, 2021년 3억 5천 2백만원, 2022년 3억 7천만원의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실적에 비해 2023년도에는 감면액이 3백만원에 그치고 있는 감면 실적으로 볼 때,
- 문화지구 권장업종의 대부분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부서의 현지 조사를 통한 실효적인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시세 감면조례 타당성 평가 요약(한국지방세연구원) >

(단위: 백만원)

구분	감면 규모 (2023)	일몰 연장 여부	검토의견
제6조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3.2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첼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인해 문화지구에서 전통적인 업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조세·재정지원으로 이들 업종의 운영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지원이 건물주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있으나, 지방세가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건물주에 대한 과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시설에 대한 감면 3년 연장(안 제6조의2)

- 안 제6조의2는 정부의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 등 서울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클러스터로서의 성수IT 진흥지구와 관련하여,
 - 재무국은 본 조례 감면을 통해 성수 IT 진흥지구 내 권장시설업종(IT 및 R&D)의 유치 및 집적화를 유인하기 위하여 세제 감면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조 항	현 행('24)	개 정 안('25~)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p>	<p>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권장업종(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권장업종시설(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건축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 4. < 생 략 ></p> <p>② < 생 략 ></p>	<p>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권장업종(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권장업종시설(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건축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 4. < 생 략 ></p> <p>② < 현행과 같음 ></p>

감면개요

-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지구 안에서 권장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8호에 따른 권장업종(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50% 경감
 -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권장업종은 IT 및 R&D업으로 2010년 기준으로 권장업종 사업대상자 수가 2,163개였음
- 감면세목(감면율) : 취득세(50%)
- 사후관리 : 추징사유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추징

□ 감면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추계)
감면액			2,784	2,784

▶ '24년(추계) 계산 : 23년 감면 신설 조항으로 '23년 감면액으로 추계

- 안 제6조의2(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시설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은 권장업종의 집적에 따른 시너지가 크지 않다면 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 본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이 한 번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제도를 연장한 후 감면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시세 감면조례 타당성 평가 요약(한국지방세연구원) 〉

(단위: 백만원)

구분	감면 규모 (2023)	일몰연장 여부	검토의견
제6조의2 성수 IT산업·유통개발 지구의 권장업종에 대한 감면	2,784	연장	- 다른 지역,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권장업종의 집적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다면 이 제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나올 수 있음 - 이제 도입 후 1년치의 실적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너지 효과와 형평성 문제를 분석하기 곤란한 상황이므로 제도를 연장한 후 시간을 두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6)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3년 연장(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도시형 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50%) 감면에 대한 규정으로,
- 재무국은 취득세 감면을 통해 준공업지역에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 유치, 준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도시지역 내의 친환경 공장 유인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감면 규모는 연간 2억원 수준이며, 재무국은 준공업지역 내 공장의 타지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감면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조항	현행('24)	개정안('25~)
제8조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개요

○ **감면대상 :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 준공업지역 현황 ('24.2월 기준)

자치구별	계	성동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면적(km ²)	19.97	2.05	1.49	0.09	2.92	4.20	4.12	5.02	0.08
비율	100	10.3	7.5	0.5	14.6	21.0	20.6	25.1	0.4

○ **감면세목(감면율) : 취득세(50%)**

○ **사후관리 : 추징사유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 추징**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실적 (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추계)
감면액	96	1	-	32

▶ '24년(추계) 계산 : '21~'24년 3개년 감면 평균액

-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본 감면 규정의 지원 범위가 준공업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유사한 지원제도들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원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등 지원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분석과 함께 제도 폐지를 제언하고 있는바,
- 안 제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주관부서와의 협의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세 감면조례 타당성 평가 요약(한국지방세연구원) 〉

(단위: 백만원)

구분	감면 규모 (2023)	일몰연장 여부	검토의견
제8조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0	폐지	- 지원의 범위가 준공업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준공업지역 중에도 소수의 지역에 지원대상이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유사한 다른 지원제도들이 있으며, 지원규모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지원실적이 없어 지원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사업 주관부서(산업입지과) 의견 : 친환경 공장 유인, 상대적 높은 지가, 벤처기업 지원 등과의 형평성,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신·증설 대비 감면 연장 필요

7)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안 제9조는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하는 기존(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원주민 보호 및 기 시행중인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재산세도시지역분(면제), 지역자원시설세(면제)

조항	현행('24)	개정안('25~)
제9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p>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하 “특정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②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p>	<p>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하 “특정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②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p>

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또는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 후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또는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 후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

감면 개요

- 감면대상 :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기존(특정)무허가 건축물
- 감면세목(감면율) : 재산세도시지역분(면제), 지역자원시설세(면제)
 - 기존(특정)무허가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철거되어 이미 재산세도시지역분 등이 부과된 후에도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면제)함
- 기존무허가건축물 현황

(2024. 6. 기준)

구분	정비현황				잔여 동수	비고 (신규등재)
	계	자진철거	재개발	기타		
2019	450	106	282	62	26,769	11
2020	629	118	439	72	26,207	67
2021	459	83	274	102	25,911	163
2022	1,724	58	1,253	413	24,189	2
2023	269	75	60	134	23,936	16
2024	821	221	468	132	23,118	3

※ 특정무허가건축물('89.12.24.)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감면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추계)
감면액	-	-	-	-

- 다만, 본 조문 감면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4년간 감면 실적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고, 특정무허가 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취지에서 이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시세 감면조례 타당성 평가 요약(한국지방세연구원) 〉

(단위: 백만원)

구분	감면 규모 (2023)	일몰연장 여부	검토의견
제9조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	0	폐지	- 최근 4년간 감면실적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정무허가 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 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적법한 건축물도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되거나 이전에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으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주관부서(주거정비과)에서는 제도 폐지 시 기존 감면 대상자와의 형평성 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 또는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분담금 등을 부담할 여건이 안되는 상황이며,
- 취약계층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필요성 등 사유를 들어 시세 감면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취약계층 보호와 함께 투기 목적의 불법건축물은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 본 지방세 감면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 주관부서와의 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3년 연장(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세* 감면(면제) 규정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은 영세상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 및 조세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무국은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영세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편의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감면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조항	현행('24)	개정안('25~)
제10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p>「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개요

○ 감면대상 :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 감면세목(감면율) : 취득세(면제), 재산세 도시지역분(면제), 지역자원시설세(면제)

※ 구세인 재산세도 과세기준일 현재 용도에 적합하면 면제

○ 사후관리 : 추징사유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 추징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및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추계)
감면액	19	18	14	17

▶ '24년(추계) 계산 : '21~'23년 3개년 감면 평균액

- 다만, 연도별 감면액 총액이 1천 5백만원 내외에 그쳐 실제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장기적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전체의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지원과 조세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재구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세 감면조례 타당성 평가 요약(한국지방세연구원) 〉

(단위: 백만원)

구분	감면 규모 (2023)	일몰연장 여부	검토의견
제10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14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은 영세상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및 조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편 지원규모(연도별 1,500만원 내외)가 작아 실제로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됨 · 장기적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산 및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9)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3년 연장(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 취득세(50%), 법인지방소득세(50%) 및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50%) 감면

- 「지특법」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영리기업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 감면 취지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본 시세 감면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조 항	현 행('24)	개 정 안('25~)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p>	<p>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 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합병·분할은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p>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 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합병·분할은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 감면 개요

○ 감면대상 및 세목(감면율)

- 사회적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50%)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법인지방소득세(50%), 주민세 사업소분(50%)·종업원분(50%)

<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

(단위 : 개)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협동조합수	623	727	808	893

○ 사후관리 :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법인지방소득세 추징

- (취득세) : ①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 ①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②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산사유 발생(합병·분할 제외)

□ 감면 실적 (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추계)
감면액	196	657	667	506

▶ '24년(추계) 계산 : '21~'23년 3개년 감면 평균액

- 다만, 연간(2023년) 감면 규모가 6억 6천 7백만원에 달하고 있는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시세 감면의 효과 분석과, 감면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 시세 감면의 적정성과, 실질적 효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소득세, 법인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에서는 처음 2년간 100%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50% 경감하도록 규정됨.

〈 시세 감면조례 타당성 평가 요약(한국지방세연구원) 〉

(단위: 백만원)

구분	감면 규모 (2023)	일몰연장 여부	검토의견
제11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667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협동조합이 정부에서 규정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므로 정부가 지원하여 설립 및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는 규정임 -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경감은 기한의 제한이 없이 세부담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세 등 감면규정과 같이 일정기간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0)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3년 연장(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받은 구역 내에서,
 - 부동산을 소유한자(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가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85㎡ 이하)에 대한 취득세 감면(면제) 규정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 항	현 행('24)	개 정 안('25~)
제11조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p>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7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p>	<p>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7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p>

<p>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p> <p>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p>	<p>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p> <p>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p>
--	--

감면개요

○ 감면내용

-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 감면세목(감면율) : 취득세(면제)

감면 실적 (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추계)
감면액	3,707	1,142	-	1,616

▶ '24년(추계) 계산 : '21~'24년 3개년 감면 평균액

○ 2008.3.11.이전 정비구역지정 현황

- 현재 재개발사업 19개소 추진중

구분	계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공	준공
합계	추진중 : 19개소							103
	122	0	0	2	6	6	5	
재개발	81	0	0	1	3	6	2	69
(재촉지구) 재개발	41	0	0	1	3	0	3	34

-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본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2011.1.1.)할 당시 본 조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 종전 조례 부칙으로 보호받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일” 사이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들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 2008.3.12.「시세 감면 조례」개정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취득세 감면대상 선정 시점을 종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앞당겨 변경하면서, 조례 부칙에 조례 시행(08.3.12)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부터 적용토록 함.
 - 이에 따라 2008년 3월 12일 본 조례 개정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조합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 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신뢰보호 차원에서 감면연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세전문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 조례의 일몰 연장이 없다면 심각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일몰연장의 타당성이 존재함. 또한 조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은 노후 주택의 재개발을 촉진, 그에 따른 주거의 질을 개선하며 판단되어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3년 연장(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도시계획시설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도시계획시설 실효 제*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2020.6.29.)된 토지 등에 대하여 정책 일관성 및 조세형평을 위해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면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함.

***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지정된 후 20년 동안)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97헌바26, 1999.10.21.)함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 전부개정으로 실효제도 도입(2000.1.28.)되었고,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02.2.4.)으로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2000.7.2. 이후는 그 날)로부터 2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

-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km²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음.
- 서울시는 지방세 감면 규정(본 조문)을 신설(2018.12.31.)하고, 기존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2020.6.29.)하여 운영 중임.

조 항	현 행('24)	개 정 안('25~)
제14조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u>2024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u>2027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 **감면내용 :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

- 감면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장기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

※ 재산세(구세)는 자치구 감면조례로 50% 감면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23년 기준, 공원조성과 자료 참조) 》

구 분	개소수	면 적(km ²)				비 고
		계	사 유 지	국 유 지	시·구유지	
도시자연 공원구역	68	69.47	36.50	25.54	7.43	

□ 감면 실적 (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추계)
감면액	560	610	664	611

▶ '24년 감면액(추계) : '21년~'23년 평균 감면액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실효위기에 있는 도시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지정(2020.6.29.)한 취지로 볼 때, 감면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세 감면조례 타당성 평가 요약(한국지방세연구원) 〉

분석 항목		주요 내용	
타당성	정책목표의 타당성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필요성)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재산권 영향 경감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정책의 공익성)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궁극적인 수혜대상은 서울시민으로, 정책목표는 자연환경 보호로 공익성이 확보됨
	지자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의 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 역할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됨
	정책수단의 적절성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단의 적절성) 재산세 감면(조세지출)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라는 재산의 보유비용 경감을 통해 협의의 정책목표인 '재산상 불이익 교정'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어 보조금 지원(재정지출)보다 더 적절하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전 토지주(장기간 토지 보유자)와 지정 후 토지주 간에 자본화(capitalization)에 따른 감면수혜자 간 조세형평성 문제 발생 • (지원대상의 적절성) 지원대상인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는 지목별 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서로 달라 재산세 감면에 따른 유인이 상이함

분석 항목		주요 내용	
	타 조세지원제도와 중복성	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은 현재 서울시가 신설 추진 중인 감면조례인 ‘비오톱 1등급 토지에 대한 감면’과 유사·중복성이 높으나,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감면요건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중첩되지 않는 비오톱 1등급 토지”를 규정하여 유사·중복성이 제거됨
효과성	경제적 효과	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영향)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뿐만 아니라 비오톱 1등급 토지에 대한 감면 신설 시 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은 준수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재산세 50% 감면으로 인해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부담 차이가 발생하나 소수 자치구를 제외하면 큰 차이는 아니라고 평가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55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조례 내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이 '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세 감면 조항의 적용기한을 '27. 12. 31.까지 3년 연장(안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8. 16. ~ 2024. 9. 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 (☎ 02-2133-335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를 “따른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복감면의 배제)”를 “(중복 특례의 배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를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법령 및 이 조례 등”으로,

“감면규정”을 “지방세 특례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신설>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 다른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 2027년 12월 31일 -
----- .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취득하거나 보

② (생략)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

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

----- 2027년 12월 31일 -----

②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8호에 따른 권장업종시설(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건축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
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
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 2027년
12월 31일-----.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 (생략)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

----- 2027년 12월 31일-----

-----.

-----.

1. 2. (현행과 같음)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

----- 2027년 12월 31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항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정한다.

1.·2. (생략)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2. (생략)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

----- 2027년 12월 31일-----.

1.·2. (현행과 같음)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

----- 2027년 12월 31일-----.

1.·2.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기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조항의 감면 적용기간에 대한 연장으로 추가적인 세입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2133-3355)